##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6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 강준현 • 윤준병 • 김남근

김현정 • 문진석 • 서미화

박정현 · 서영석 · 이광희

송재봉 • 맹성규 • 정태호

민병덕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·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84조, 제87조의2, 제89조의2,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).

###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"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이 법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8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"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"을 "이 법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8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 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"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"을 "이 법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 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의2 중 "보험사기행위"를 "보험사기행위(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10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을 "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·유인·권유 또는 광고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험설계사 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(제86조제1항제1호·제2호, 제87조제2항제1호, 제88조제1항 제1호·제2호, 제89조제2항제1호,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 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89조의2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(보험설계사의 등록) ①	제84조(보험설계사의 등록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	
되지 못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	3. 이 법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
<u>호에 관한 법률」</u> 에 따라 벌	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험사기
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	<u>방지 특별법」</u>
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	
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	
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	
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
4. 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	4. 이 법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
<u>호에 관한 법률</u> 에 따라 금	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험사기
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	<u>방지 특별법」</u>
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	
있는 자	
	_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~ ④	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~ ④

(생략) <신 설>

제87조의2(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조 의 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 인 보험대리점(이하 "법인보험 대리점"이라 한다)의 임원(이사 •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 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이 되지 못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| 에 따라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(생략)

(현행과 같음)
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
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
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
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
한다.
세87조의2(법인보험대리점 임원
의 자격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
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험사기
<u>방지 특별법」</u>

② (현행과 같음) 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제89조의2(법인보험중개사 임원 기의 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(이하 "법인보험중개사"라 한다)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② (생 략)

 제90조(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기능) ① ~ ③ (생 략)

 <신 설>

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
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
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
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
<u>한다.</u>
제89조의2(법인보험중개사 임원
의 자격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
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험사기
<u>방지 특별법」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90조(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
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

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

제102조의2(보험계약자 등의 의무)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2조의3(보험 관계 업무 종사 자의 의무) 보험회사의 임직원,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 중개사, 손해사정사,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는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1.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 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 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 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 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

	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	<u>도</u>
	등을 고려하여 총리렁으로	<u>정</u>
	한다.	
제	102조의2(보험계약자 등의	의
	무)	
	<u>보험사기행위(「보</u>	험
	사기방지 특별법」에 따른	
	험사기행위를 말한다. 이하	
	다)	
제	 102조의3(보험 관계 업무 종	사
	자의 의무)	
	보험사기행위 또는 보	헍
	사기행위를 알선・유인・권	
	또는 광고하는	<del>-''-</del> 
	· <u>&lt;삭 제&gt;</u>	
	<u>× 1 × 1/2</u>	

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 도록 하는 행위

2.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 <삭 제> 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 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 험사고의 원인, 시기 또는 내 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 령하도록 하는 행위